

# 96년도 총여학생회 회칙

## 제1장 총칙

### 총여학생회 회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총여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는 호남대학교 여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의 정립과 만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대학문화를 창달하며 여학생의 이와 요구를 수렴하여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시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제4조 (지위)

총여학생회는 본교 여학생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자치기구이다.

####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고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자치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본회와 본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을 때 공동 대처할 권리를 갖는다.

#### 제6조 (구성)

본회는 제2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회 및 총여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국, 단과대학별 여학생회(부)를 둔다.

## 제2장 여학생회 총회

#### 제7조 (지위)

여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8조 (구성)

여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제9조 (권한)

여학생총회는 본 회 회칙의 전면 개폐 및 학생 전체에 관한 종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제10조 (의장)

여학생총회의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이 한다.

#### 제11조 (소집)

1. 정기총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총여학생회장

- 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총여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여학생총회의 소집공고는 4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 (의결)

여학생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총여학생회장

#### 제13조 (지위)

-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여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국의 의장이 된다.
- 총여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제14조 (임기)

총여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공고일로 부터 다음해 총여학생회 출범일 이전까지로 한다.

#### 제15조 (업무 및 권한)

- 여학생들의 제반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 집행국의 각국장과 부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국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 총여학생회 전체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본회의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본회와 여학생 전체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하는 특별위원회를 총여학생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 본회를 대표하여 총여학생회의 중대사에 대해 학교 해당 기구에 침석하여 의견을 게진 할 수 있다.

#### 제16조 (신분보장)

- 총여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이 절대 보장된다.
- 탄핵권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 제4장 운영위원회

#### 제17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관이다.

#### 제1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장, 부회장, 각단대 여학생회장, 집행국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 제19조 (업무 및 권한)

- 본 회의 전체 사업과 예산, 결산을 검토, 신의 한다.
- 여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총여학생회장의 탄핵권을 가진다. 단, 재적인원 2/30이상 출석과 2/30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5장 집행국

### 제20조 (지위)

집행국은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제21조 (구성)

집행국은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부회장, 각국장, 각부장으로 구성한다.

### 제22조 (업무 및 권한)

1. 운영위원회와 집행국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총여학생회의 일체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국의 동의를 거쳐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4. 집행국은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1) 부회장: 총여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여학생회회장 곁위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2) 사무국: 총여학생회에 관한 제반 사무 및 활동계획, 세무, 회계를 담당한다.
  - 3) 정책국: 총여학생회의 정책을 연구하고 생신하며 본 회 정책사업 전반을 풍화한다.
  - 4) 교육국: 본 회와 학내외의 교육을 담당한다.
  - 5) 편집 · 선전국: 정 · 부정기적 간행물 발간 및 문화, 예술, 그에 따른 행사를 주관한다.
  - 6) 일상사업국: 본 회의 인권과 생복지에 관한 업무 및 여성취업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 제6장 단과대 여학생회

### 제23조 (지위)

각 단대 최고의 여학생회 기구이다.

### 제24조 (구성)

각 단과대 여학생회는 단과대 여학생 전체로 한다.

### 제25조 (회장)

1. 각 단대 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와 단대 학생회의 은영위원이 된다.
2.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총여학생회장과 동일하다.

### 제26조 (업무 및 권한)

각 단대 여학생회는 단대 여학생회칙에 의해 해당 단대 여학생회의 모든 활동을 독자적으로 한다.

## 제7장 재정

### 제27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총학생회 예산중 총여학생회 예산과 보조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28조 (회계)

본 회의 회계는 총여학생회의 임기로 하되 매학기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제29조 (예산편성 및 심의)

예산은 집행국이 가편성, 심의, 확정한다.

## 제8장 선거

#### 제30조 (선거)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 제31조 (피선거권)

총여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아래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자에 해당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2.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 제32조 (선거시기)

총학생회 선거시기와 동일하다.

#### 제33조 (선거방식)

1. 본 회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직접, 평등으로 한다.
2. 투표율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후보시는 찬반투표로 한다.

#### 제34조 (선거관리)

1. 선거공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총여학생회장이 되며 집행국과 여학생대표중 3인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주일 전에 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

## 제8장 회칙개정

#### 제35조 (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36조 (의결공포)

발의시, 총여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 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여학생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제9장 부칙

####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호남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총여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는 완전한 학생 자치권을 통한 호남대학교 여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의 정립과 만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대학 문화를 창달하며 여학생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자주권 확보,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적이며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시에는 그 기간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제4조 (지위)

총여학생회는 본 교 학생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자치기구이다.

### 제5조 (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자치 활동을 한다.

1. 학술 활동
2. 문화 예술 및 교양활동
3. 학생복지에 관한 활동
4. 체육 · 봉사활동
5. 여성단체를 비롯한 연대사업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권리

- 1)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조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 3)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및 자치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 4) 본 회의 회원은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를 받을 때 공동 대처할 권리를 갖는다.

#### 2. 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를 수호하고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내·외의 탄압에 맞서 학생회를 지킬 의무를 가진다.

#### 제7조 (구성)

1. 본 회는 제2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회 및 총여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국, 단과대별 여학생회(부)를 둔다.
2. 본 회는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총여학생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 제2장 여학생총회

#### 제8조 (지위)

여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9조 (구성)

여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제10조 (의장)

여학생총회의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이 한다. 단, 총여학생회장이 궐위시, 부총여학생회이 위임한다.

#### 제11조 (권한)

1.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2. 여학생총회는 본 회 회칙의 전면 폐지할 수 있다.

#### 제12조 (소집)

1. 정기총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3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총여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여학생총회의 소집공고는 4일 이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제13조 (의결)

여학생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관이다. 이하 “운영위”라 칭한다.

#### 제15조 (구성)

운영위는 총여학생회장, 부총여학생회장, 각 단대 여학생회장, 집행국의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 제16조 (업무 및 권한)

1. 본 회의 전체 사업과 예산, 결산을 검토, 심의 한다.
2. 여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3.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4. 여학생총회를 소집, 의결할 수 있다.
5. 학교당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6. 총여학생회장의 탄핵권을 가진다. 단, 재적인원 2/30이상 출석과 2/30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17조 (소집)

1. 운영위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둔다.
2.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를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총여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 1/6 이상이 요구했을시 소집된다.

#### 제18조 (의결)

운영위의 모든 의결은 현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4장 총여학생회장, 부총여학생회장

#### 제19조 (지위)

1.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여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국의 의장이 된다.
2. 총여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3. 총여학생회장은 본회 회원 전체를 대표하여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협의회 등 각종 대표자 회의에 참가한다.
4. 부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여학생회장 궐위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권한행사를 요할때는 부총여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 (임기)

총여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공고일로 부터 다음해 총여학생회 출범일 이전까지로 한다.

#### 제21조 (업무 및 권한)

1. 여학생들의 제반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2. 집행국의 각국장 및 부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3.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국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4. 총여학생회 전체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5. 본회의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6. 본회와 여학생 전체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하는 특별위원회를 총여학생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7. 본회를 대표하여 총여학생회의 중대사에 대해 학교 해당 기구에 침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 제22조 (신분보장)

1. 총여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이 절대 보장된다.
2. 탄핵권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 제5장 집행국

### 제23조 (지위)

집행국은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24조 (구성)

집행국은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부회장, 각 국장 및 부장으로 구성한다.

### 제25조 (업무 및 권한)

1. 운영위원회와 집행국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총여학생회의 일체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총여학생회장과 집행국의 동의를 거쳐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4. 집행국은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1) 사무국 : 총여학생회에 관한 제반 사무 및 활동계획, 세무, 회계를 담당한다.
  - 2) 정책국 : 총여학생회의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며 본 회 정책사업 전반을 풍화한다.
  - 3) 교육국 : 본 회와 학내외의 교육을 담당한다.
  - 4) 편집 · 선전국 : 정 · 부정기적 간행물 발간 등 선전 편집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 5) 복지국 : 본 회의 인권과 학생복지에 관한 업무 및 여성취업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 6) 문예국 : 문화, 예술, 교양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 제6장 단과대 여학생회

### 제26조 (지위)

단과대 여학생회는 각 단대 최고의 여학생회 기구이다. 이하 “단여”라 칭한다.

### 제27조 (구성)

1. 단여는 단과대 여학생 전체로 한다.
2. 단여는 단대 여학생총회, 단대 여학생 대표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들수 있다.

### 제28조 (회장)

1. 단여 여학생회장은 단대 여학생회를 대표한다.
2.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총여학생회장과 동일하다.

### 제29조 (업무 및 권한)

1. 단여 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2. 단여는 단대 여학생회칙에 의해 활동하며 운영위의 결정사항 및 단여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 제7장 과여학생회

### 제30조 (지위)

과여학생회는 각 학과의 여학생 대표학생기구이다. 이하 “과 여회”라 칭한다.

### 제31조 (구성)

과 여회는 각 과 여학우들로 구성하며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인 조직을 갖는다.

#### 제32조 (회장)

1. 과 여학생회장은 과 여학우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2. 과 여학우들을 대표하여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3. 운영위원이 된다.

#### 제33조 (업무 및 권한)

1. 과 여회는 단여나 총여학생회의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다.
2. 각 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8장 과여학생부

#### 제34조 (지위)

과여학생부는 각 학과의 여학생을 대표하여 폭넓은 활동을 고민하고 총여학생회, 과 학생회 강화에 기여한다. 이하 “과 여부라 칭한다.”

#### 제35조 (구성)

과 여회는 각 과 여학우들로 구성하며 그 활동은 총여학생회, 과학생회와 함께 수행한다.

#### 제36조 (부장)

1. 과 여학생부장은 과 여학우의 의견을 참고하여 과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 총여학생회와 연대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다.
3. 운영위원이 된다.

#### 제37조 (업무 및 권한)

1. 과 여부는 단여나 총여학생회의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다.
2. 각 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7장 재정

#### 제38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총학생회 예산중 총여학생회 예산과 보조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39조 (회계)

본 회의 회계는 총여학생회의 임기로 하되 매학기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제40조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집행국이 기관성, 운영위에 제출한다.
2. 운영위는 예·결산을 심의 확정한다.

## 제8장 선거

#### 제41조 (선거)

모든 선거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로 한다.

#### 제42조 (선거권)

본교의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선거권을 갖는다.

#### 제43조 (피선거권)

총여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아래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자에 해당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자로 한한다.
2.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3.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 제44조 (선거시기)

총학생회 선거시기와 동일하다.

#### 제45조 (선거방법)

투표율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후보자는 찬반투표로 하고 과반수 이상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 제46조 (선거관리)

1. 선거공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총여학생회장이 되며 운영위원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주일 전에 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

#### 제47조 (재선거)

1. 선거가 무효로 결정났을 경우 재선거를 한다.
2. 당선된 이가 임기 개시 전에 사임 하였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3. 단독후보일 경우 투표자 과반수 이상 반대했을 경우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4. 재선거의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5. 재선거는 재선거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실시한다.

#### 제48조 (보궐선거)

1. (총여학생회장이 탄핵 됐을 경우) 보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회칙에 의한 궐위가 아닌 경우) 임기와 관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호선하고 그 직을 대행한다.

#### 제49조 (선거 시행 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급단위의 선거규약에 따른다.

## 제8장 회칙개정

#### 제50조 (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51조 (의결공포)

발의시, 총여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여학생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제9장 부칙**

###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관례)**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여학생회 회칙 제정안

---

문학과 투쟁과 사랑의 운동체

민족 국어 국문학과 여학생회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여학생총회

제 3 장 여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5 장 집행부

제 6 장 제 정

제 7 장 선 거

제 8 장 회칙개정

부 칙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여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

제 2조(목적)

- ✓ 1. 본회는 회원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의 정립과 여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한다.
- ✓ 2. 본회는 올바른 대학문화를 창달하며 ~~국문~~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3.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본과의 전통과 이념에 입각한 학문활동을 하여 국어국문학과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 ✓ 4. 본회는 외세에 짓밟힌 조국강토를 우리의 것으로 되찾아 민족자존을 실현함과 동시에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제 3조(설치) 본회는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안에 둔다.

제 4조(회원의 자격)

- 1. 본회의 정회원은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 2. 휴학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준회원이 되며 복학시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2. 본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치활동과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5. 본회의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6.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7. 본회의 회원은 사상의 자유, 의사 개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갖는다.

제 6조(구성)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학생총회', '여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로 구성하며 특별사안에 따라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2 장. 여학생총회

제 7조(지위 및 구성) 여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로써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조(의장) 여학생총회의 의장은 여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여학생회장缺位시 여부학생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여부학생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1인을 호선한다.)

제 9조(권한) 여학생총회는 다음 사항을 투의·결정한다.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 1.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 2. 여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3. 여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의결.

제 10조(소집) 여학생총회는 정기 여학생총회와 임시 여학생총회를 둔다.

1. 정기 여학생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4월로 한다.
2. 임시 여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① 여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② 여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③ 여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④ 여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3. 정기 여학생총회 소집은 10일 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4. 임시 여학생총회 소집은 3일 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 방학중에는 각 회원의 집에 10일 전까지 안건과 함께 공고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항에 관해서는 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의결) 여학생총회는 전체 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제 9조 2항의 경우는 ~~2/3~~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제 3 장. 여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제 12조(지위)

1. 여학생회장은 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여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 대표자 회의, 인문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인문과학대학  
여학생회 운영위원회, 국문과 학생회 확대간부회의·운영위원회에 참가한다.
3. 여부학생회장은 여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여학생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여부학생회장은 인문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국문과 학생회 확대간부회의에 참가한  
다.

제 13조(임기) 여학생회장과 여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  
다.

제 14조(업무와 권한)

1. 집행부의 각부장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본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여학생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여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  
행한다.
5. 여학생회와 여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심의 해결할 임시기구를 운영위원  
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6. 여학생회장은 전체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및 학생활동에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  
고 요구되는 사항을 학교 당국에 의사 개진할 권리가 있다.
7. 기타 여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5조(의무)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보고의 의무를 지닌다.

제 16조(여학생회장, 여부회장의 신분보장) 여학생회장과 여부학생회장은 여학생총회에 의해 탄  
핵 걸의 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7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 18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여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학년 학생회 여대표로 구성한다.

제 19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여학생회의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한다.
2.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여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여학생회장의 임시기구 설치 요구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
5. 여학생회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여학생총회에 상정한다.
6. 특별기구 업무 집행에 대하여 검토 심의 조정한다.
7.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검토 심의 조정한다.
8. 여학생총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제의를 요청할 수 있다.
9. 여학생회비의 지출 내역을 심의하여 학생회 확대간부회의에 제출한다.

제 2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여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여학생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 결한다.

## 제 5 장. 집행부

제 22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3조(구성) 집행부는 여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각 부서 부장과 차장 그리고 그 부원으로 구 성한다.

제 24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여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2. 여학생회 일반 사업 계획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각 부서의 부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보시 그 직 무를 대행한다.
4.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제 25조(체계와 역할)

1. 일상사업부: 본회 회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고 본회의 문화 예술에 관련 된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2. 학술기획부: 본회의 정기 간행물 및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등 회원들의 의식 함양에 관 한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3. 연대사업부: 본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추진하는 연대사업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26조(회의) 정례화 시킨다.

## 제 6 장. 제 · 정

제 27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학생회 예산 중 여학생회의 예산과 보조금, 기타 수익으로 충당하며 본회에 규정된 활동 이외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학기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제 29조(예산)

1. 여학생회비 집행은 여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2. (지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회 확대간부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결산) 결산보고는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하고 결산안은 여학생회장이 일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선 거

제 31조(선거) 본회의 선거에 관한 일반 사항과 세부 사항은 국어국문학과 학생자치단체 선거 자치 규약에 따른다.

## 제 8 장. 회칙개정

제 32조(발의)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
2. 회원 70명 이상의 발의.

제 33조(의결 및 공고) 발의시 여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찬성으로 의결하며 여학생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고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

## 부 칙

1. 본회칙은 공포되는 날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칙은 회칙개정이 있기전 까지는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

3. 본회칙은 학생회칙에 준하며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에 따른다.